

보도시점

2024. 1. 12.(금) 조간
2024. 1. 11.(목) 12:00

배포

2024. 1. 11.(목)

[2024년 보건복지부 정책 돋보기]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

< 요약본 >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두 배 이상 확대('23년 1,030개 반 -> '24년 2,315개 반, 신규 1,285개 반 '24.7월부터 운영)

< 상세본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다. 올해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지난 11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다. 위 조사와 같이 많은 양육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데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가 될 거라 예상된다.

* 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③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④ 양육비용 부담경감 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1.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2.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

- 부모급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유튜브(복따리TV)에 게시되어 있는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복따리TV -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https://youtu.be/Ud8vGINMfXM>)

□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서,

○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두 배 이상 확대('23년 1,030개 반 -> '24년 2,315개 반, 신규 1,285개 반 '24.7월부터 운영)

<붙임> 부모급여 제도 안내 포스터

담당 부서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승묵 (044-202-3560)
		담당자	주무관	안혁재 (044-202-3572)



부모급여 받으며,



아이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2024년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2023년은 0세 70만원, 1세 35만원('22년생부터 적용)

**2024년
부모급여
알아두세요!**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반드시 보육료로 신청하세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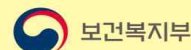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왼쪽에 있는 큐알코드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결심, 부모급여로 안심



보건복지부